

제41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0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3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3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318.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3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3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3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3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3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326.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상정된 안건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13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13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14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14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14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19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19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24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25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25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30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30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30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30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31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3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3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3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3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3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3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31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31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31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3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3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3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3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3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32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32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3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32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32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32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3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3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3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3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32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3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3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32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3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32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3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32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32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32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3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32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32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32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32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32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32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32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3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32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32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32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32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32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32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32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3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32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3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33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3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33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3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33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33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33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3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33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33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33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33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3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33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33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33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33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3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33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3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3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33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33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33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3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33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3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3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3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3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3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3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3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3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33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3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33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3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3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3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33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3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3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34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34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3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3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3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3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3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3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3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34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34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34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34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34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3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3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34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34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3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34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34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34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3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34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3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34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3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3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34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34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34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34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34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34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3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34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3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34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3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34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34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34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3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3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35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35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3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35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35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35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3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35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3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3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35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35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35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35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35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35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35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3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35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35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35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35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35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35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35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35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35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35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35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35

(10시46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소위가 세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심사해야 될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2권을 마치도록 하고 3권도 시간이 되는 대로 했으면 하는 게 소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세 번 있고 다음 주에 두 번의 소위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또 보좌관 포함해서 행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정부 측이 세법 개정안을 언제까지 내지요? 8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보통 9월 1일까지 내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8월 한 중순 정도 되면 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발표요?

○유동수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발표는 7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7월 말에 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정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국회

가 깊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면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예를 들어 8월 중순 이후에 결산을 할 때 저희 조세소위를 정부가 제출한 안만 가지고 8월 중순부터 국감 준비하기 전까지, 8월 말까지라든지 보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때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조세소위를 한번 1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때 예산안과 함께 다시 한번, 그때 의결하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제출한 것을 가지고 검토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때 조세소위를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국회가 세법에 대해서,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11월에 임박해서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과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시기에 너무 많은 로딩이 걸리고 또 심도 있게 검토되기가 어렵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 한번 드리고, 다음 기재위에서는, 22대 국회 기재위에서는 그렇게 조세소위가 운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개별소비세법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87항부터 제91항까지 이상 5건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25쪽입니다.

첫 번째,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과 이인선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중유를 수입, 구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2013년부터 정제마진 제고를 위해 원유보다 가격이 낮은 석유중간제품인 중유를 수입해서 석유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이후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위험 분산 및 석유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유 투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중유를 투입하여 정제공정을 거치면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된 석유제품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LPG·휘발유·등유·경유 등 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지만 나프타·아스팔트·항공유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생산에 투입되는 중유가 되고, 해당 중유에 대해서는 20년 세법 개정 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신설해서 2021년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개정안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셋째,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며, 중국도 석유정제공정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있어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중유를 원료로 하는 최종 석유제품인 나프타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당 제품들이 비과세물품임을 감안하여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21년과 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제도는 정유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조세특례의 도입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20년도에 정유 4사는 총 4조 6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에 21년도에는 총 5조 3372억 원의 영업이익, 22년도에는 11조 9283억 원의 이익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상반기 실적은 22년 상반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다가 23년 11월 현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정유사 정제마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4년에 246억 원, 5년간 총 1232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개별소비세의 대

상이 되면 그게 생산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유뿐만 아니고 유연탄, LNG의 경우에도 그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체계고요.

다만 21년과 22년의 경우에는 정유사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정유사들의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차관님, 두 가지 이유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요즘 정유회사 사정이 좋으니까 그럴 필요 있냐는 게 후자고.

전자의 원칙이 뭐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어쨌든 개별소비세라는 품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치성소비 이런 부분의 의미로 부과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교정세적 성격으로 넣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원료로 쓰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면제를 하자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원료로 쓰였는데 그중에서 휘발유나 이런 것처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 줍니다, 이중과세를 빼기 위해서. 그런데 나프타나 이런 부분은 개별소비세 과세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료로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하는 부분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맞다, 지금 체제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우리가 면세 특례 신설했을 때는 그런 어려운 정유업계의 경영을 해소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것은 저도 일부 이해를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정유업계가 과다한 이익을 얻고 있어서 횡재세라고 통칭되는 이런 것을 적용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런데 원칙 부분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가 최종소비재가 아니잖아요. 나프타나 기타

아스팔트 이런 데 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라도 붙여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원칙으로 하면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개소세는? 원료용 연료에 붙어야 됩니까? 원료용에 붙어야 됩니까, 연료도 아닌데? 최종으로 사용되는 소비재로서 거기에 붙는다고 그러면 개소세가 맞는데 이것은 나프타·아스팔트·항공유 이런 생산에 투입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상 여기에 개소세를 붙이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지금은 붙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나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쓰임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제어한다고,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최종소비재로 쓰였느냐 또는 원료로 쓰였느냐에 굳이 차별을 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고용진 위원 이런 식으로 제품의 원료로 쓰인 것에 다 개소세가 붙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차관님이 말씀드렸듯이 과세체계가 각국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용에만 부과하는 나라가 있고요. 연료용, 원료용 구분 없이 부과하는 게 우리 세법의 큰 틀의 원칙입니다. 그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면 저희들 유연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유연탄이 대표적인 석탄·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입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LNG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고, 수소를 생산할 때 쓰는……

○고용진 위원 석탄이 어디의 원료로 쓰인다고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전기 생산할 때.

○고용진 위원 전기 생산하는 데 거기에 연료로 쓰이는 건데 이게 같습니까, 비교가? 이런 제품에,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소비재에 들어가는 원료와 같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저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옳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정할 수도 있지만 아까 후자의 이유로, 정유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한다 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들은 체계가 맞아야 되지 않나.

자꾸 이 얘기가…… 아마 금년에 또 들어올 거예요, 계속.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업계하고도 소통을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차관님께 저도 좀 여쭙볼게요.

저는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논지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다른 차원의 원칙을 제시하고 싶은데……

아무리 이런 부분에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과세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아까 세제실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어떻게 부과하느냐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증유에 대해서는 생산 원료로 쓰이더라도 과세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유류세가 다른 차원에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4년 내내 이제 탄소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홍남기 부총리 계실 때 첫째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당장 도입할 수가 없으면 연구용역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유류세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 환경적인 교정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안이 이제는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고민에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고 늘 논의가 됐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도입했을 때 영향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 이번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실상 특정 석유제품, 나프타 같은 것에 대

해서는 아예 유류세 과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큰 방향성, 환경정책으로서의 방향성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지금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도입 취지가 이미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세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유업계를 도와주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참고로 22년까지 도입되고 올해부터는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모순이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정유사의 영업이익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말씀하시지요.

○양경숙 위원 22년만 해도 11조 9283억 원의 이득이 났고 3분기에 4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동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마진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세수 감소도 벌써 5년간 한다면 1200억이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칙과 또 현실과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또 정부의 답변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주세요.

특히 학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교정세적인 의미가 개별소비세에 들어가 있다면 말하여 피구비언 텍스(Pigouvian Tax)의 적정한 세율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듣기에 아주 쉽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는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요.

개별소비세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치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교정세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교정세의 세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답변하는 걸, 제가 여쭙봤을 때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한 말씀만……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유연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어느 정도 과세하지요, 킬로그램당?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법정세율이 46원이고요.

○유동수 위원 46원에서 인하했나요, 안 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인하를 한 건 아니고 거기는 탄력세율로 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인상해서 49원을 붙이고, 그사이 43~49원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열량별로 좀 다르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칭이 개별소비세라는 게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개별소비세라는 게 사치재나 이런 부분에 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물품을 소비하는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부과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줄이고 아니면 세금을, 세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교정적 측면이 있는 세수에 개별소비세라고 붙이는 게, 명칭상 사용에 조금 혼용이 돼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명칭은.

그다음에 환급해 주고 이런 건 과세대상 제품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

○조해진 위원 전체적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고 체계상 이런 경우에 개소세에 계속 들 것인지 별도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과세 취지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치세, 환경세 막 섞여 있는 것도 한 번쯤 정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거 정리를 해서 나중에 논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번 수소제조용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 또는 면세하고자 하는 윤영석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은 수소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을 현행법상 LNG 세율과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12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님과 이장섭 의원님 안은 수소생산용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진 의원님과 이장섭 의원님 안이 발의된 이후에 정부는 2022년 2월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는 수소제조용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8.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수소생산 효율 및 CO₂ 배출 측면에서 LNG와 유사하므로 LPG를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LNG 세율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수소생산 중 LNG를 통한 수소생산량이 90만t이고 LPG를 통한 수소생산량은 11만 5000t입니다.

둘째, 수소추출 설비는 LPG와 LNG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나 투자 비용 등이 적어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수소제조용 LPG 공급으로 LNG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소 공급 및 수소 생산원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수급 불안이 발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소 제조원가 상승 요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LPG는 셰일가스에서 LPG를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용 LPG 수요도 줄고 있으며 LPG 차량용 수요도 줄고 있어서 해당 업계에서는 LPG 국제가격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제조용이라는 용도가 동일하더라도 유종 간 세율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유종별 특성에 따라 유류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둘째, 화석연료 기반 수소경제의 지원 확대는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의원님과 이장섭 의원님 안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연료전지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감안할 때 면세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탄력세율이 적용된 8.4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수소제조용 LPG 또는 LNG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하계획을, 조치를 했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4월 1일부터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조치를 이제 취했는데 LPG나 LNG를 똑같이 하자 이거는 또 CO₂ 배출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LNG를 지금 상당히, 탄력세율로는 거의 최저로 내렸는데 이걸 아예 면제하자는 부분도…… LNG가 수소제조용으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까지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운영석 위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운영석 위원 저는 이미 전문위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수소경제, 수소에너지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기재부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논리가 여기도 들어가요. 결국은 산업용에 부과되는 천연가스는 당연히 연료로 개소세 부과해도 되지만 수소자동차용 에너지인 수소 연료 이런 거에 부과하는 것은, 이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지금 여기 LNG나 LPG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레이수소라고 얘기하는 발전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수소경제를 위해서 더 많은 수소생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레이수소는 사실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린수소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하다못해 미국의 IRA에서도 수소의 탄소배출량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수소는 그 기준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기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는 것인가.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의 자원이 재생에너지여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정부 재원의 비율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레이수소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그린수소에 어떻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상으로 개별소비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11시13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2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38쪽입니다.

첫 번째, 탁주·맥주 세율의 변경 및 생맥주 경감제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개정안은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종량세로 법에 규정하고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맥주 세율의 80%인 생맥주 세율경감 특례제도를 26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세율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하는 계산식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지수는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pm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20년에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였고 종가세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반출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의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인상으로 탁주·맥주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오르는 한편, 주류 제조업자들의 제조·유통마진 인상까지 편승하면서 탁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생맥주에 대한 20% 세율경감 특례제도는

20년 맥주의 과세표준이 종량세로 전환되고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변경되도록 함에 따라 생맥주의 가격이 급등할 것을 고려해서 2년간 시장에 대한 적응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21년에 다시 2년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142쪽, 검토의견입니다.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을 물가연동제가 없는 종량세로 규정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pm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정기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서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세율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법정세율을 탁주 4만 4400원/kl, 맥주 88만 5700원/kl로 현행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 가중은 없겠습니다.

다만 20년 종량세 전환 및 소비자물가 반영, 22년 가격변동지수 도입 그리고 개정안에 따른 물가연동제 제외 등 잦은 세율정책의 변경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생맥주 세율경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생맥주의 가격상승이 완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류가격 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생맥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서 이미 총 4년간 지원하였으므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관련되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유독 AS적인 그런 형태의 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조세소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세법 개정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그다음에 또 AS 하지’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아마 잦은 정책 변화, 정책 일관성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적 부분이 저희들한테 따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세를 바꾸면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부분을 연동시켜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을 조정하자라는 입법 취지로 좋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그게 작년과 같이는……

물가상승률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높은 시기가 오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조금조금 올려 주는,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게 그걸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하라는 취지는 사실 아니라고 저희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연동제로 조금 올려 준 부분을 가지고 주류회사들이 소비자가격을 또는 판매가격을, 출고가격을 굉장히 올리는 이런 행태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이 제도가 매년 조정해 주는 이걸 악용해서 매년 조금씩, 또는 세금보다도 더 올리는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나 하면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률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모였을 때 조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탄력세율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류 가격에 있어서 매년 인상요인이, 또는 그걸 편성해서 인상하는 그런 관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변화된 환경여건을 고려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맥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계의 의견이나 현황을 좀 들어 보면 아직까지도 특례를 폐지할 정도로 정상화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주세율정책의 잦은 변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주세 부과의 원칙이 뭔가요? 대원칙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나오

는 법안에 대해서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주세정책의 큰 목표나 방향성이 뭔지가 되게 불분명하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문제점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국민들이 뭔가 합리적인 가격에 음주문화를 즐겨야 한다고 하는 것도 물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제가 기재위에서 담배나 술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때 늘 지나치게 국민 건강에 대한 관점이 빠져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론 현실이나 실질에 따라서 주세 관련된 조절들을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 주세제도의 역진성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다양한 주류별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소주나 맥주 세율 같은 경우 외국에 비해서, 와인도 마찬가지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율이 국민의 건강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런 측면에서,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또 국민의, 소비자의 부담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걸 좀 더 중시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차관님, 업계의 사정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헛갈릴 것 같아요,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건 지금 장혜영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대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장기적 관점에서 과세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런 걸 일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주세체계를 보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종량세·종가세 이런 체계도 국민 건강이나 이런 걸 보면 외국과 같이

종량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향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종가세고 어떤 부분은 종량세로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게 특히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영향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약간은 복잡한 과세체제로 모양을 갖추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또 뒤의 안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정부안을 낸 부분에 있어서는 종량세로 부과되는 부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 또는 변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저희 나름의 교육책으로 안을 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이다음에 또 다룰 증류주류 서울 종량세 부분하고도 연계돼서 논의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주류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세금 체제에 대한 스탠더드는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도 해 보고 그랬는데, 우선은 보건 차원이네요. 국민들을 알코올이라는 기호식품으로부터, 어떤 서울체제를 갖출 때 그것이 더 보건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것인가, 세 번째는 또 각국의 산업 부분인 거지요. 전통주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국내의 주류업체들을 어떻게 잘 육성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 정부로서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는 종량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는 바로 직전 연도에 맥주·탁주에 대해서 드디어 오래 이어져 오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꿨고 거기에 물가연동제를 했던 건데 그게 자꾸 업체들이 물가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해 가지고 해 버리니까, $\pm 30\%$ 해도 가격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세율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

면 종량세로 간 것은 이미 트렌드에 맞춰 가신 거고 뒷부분에 이렇게 다시, 아까 위원장님이 AS 측면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개정할 때 세심하게 못 봤던 것 같고 또 물가가 그렇게 변동할지 몰랐던 면이 있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기는 한데 오히려 예측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내용은 비슷한 취지고, 특히 주세 관련해서는 서울과 또 현실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가능성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가의 그 진폭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비자물가지수의 $\pm 30\%$ 면 최대한 탄력적인 범위가 60%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의 진폭을 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봅니다. 10%라든지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탄력적인 것을 적용하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대폭적으로 깎아 주겠다. 우리 60% 깎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 진폭이 이렇게 $\pm 30\%$ 나 되면?

그래서 저는 취지에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부가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진폭의 법안을 의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문제를 논의하려면 공청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의견 듣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의 논의가 됐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세법 개정들에 있어서는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때 업계의, 그리고 관련되는 전문가들 의견도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2번 증류주류 세율의 종량세로 전환 및 중소기업 제조 주류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주정·탁주·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종가세 세율체계로 돼 있습니다.

145쪽, 주세법 연혁을 살펴보면 49년 제정 시에는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도입하였고, 67년에는 주정·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는 종가세로 전환하였으며, 72년에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가 종가세였다가 2020년부터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을 종량세로 전환해서 현재 주정·탁주·맥주는 종량세고 증류주를 비롯한 기타 주류는 종가세 세율입니다.

146쪽입니다.

증류주는 주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고 격차가 상당히 컸지만 2000년부터 72%의 같은 세율로 통일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류주류의 세율을 종량세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와 수량에 대해서는 50% 세율경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개정안은 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되 저도주는 저세율, 고도주는 고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종량세 전환 및 세율감경을 통해 주류 제품의 고급화·다양화 전략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증류주에는 72%의 고세율을 부과하고 종가세 방식을 취해서 반출가 인상분이 그대로 세부담에 반영됨으로써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고도주에 고세율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수가 높은 고가주류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위스키 등 고가주류는 기존 대비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은 증가해서 과세 형

평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령 출고가 12만 원인 40도짜리 500ml 위스키와 360ml짜리 17도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위스키는 세부담이 78.7% 감소하고 희석식 소주는 3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8쪽에 예시로 든 세부담 차이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담 완화 혜택이 집중된 고급 수입주류인 위스키 등이 고급 전통주 수요를 대체해서 국내 전통주류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국내 소규모 전통주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겠습니다.

149쪽 세 번째, 같은 증류주 내 과도한 세부담 차이로 인해 고도주 수출국가들과의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11~21도의 희석식 소주는 리터당 1563원인 반면에 21도 초과 주류는 알코올 도수당 500원이 가산됨으로써 리터당 세액이 희석식 소주의 7배로 세액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 중에서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50% 세율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국내 주류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반면에 전체 주류 제조업 매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상당히 낮으므로 중소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241개 증류주 제조사 중에서 4개 사업자를 제외한 제조면허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경감은 수입주류 차별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WTO 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고용진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주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감안하셔서 안을 내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스키 같은 데는 가격을 크게 내리고 세금 부담은 좀 줄고 소주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로 했을 경우에 가격이 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주세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종은 하고 일부 주종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소 제조자에 대한 세율경감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내 소규모 업체들인데 이 경우는 WTO 규정 위반이라는 부분이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주세 부분이 개편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국내외 차별이라는 이슈 때문에 제기됐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고용진 위원 하여튼 증류주 종량세 전환 관련 된 법안을 내게 된 배경은요,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든 또 그냥 단순하게 보건의 측면에서 보든 주류에 매기는 세금은 종량세가 옳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중소 또는 중견 증류주 업체들이 갖고 있는, 종가세로 인한 시장 개척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우리 국내에 다양한 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어디를, 특히 의원들 더 아실 텐데 그 나라 고유의 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술부터 대중주까지 있는데 우리 외교가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의 술은 무엇이나,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소주가 우리의 대중주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과연 뭐가 있느냐?

최근에 문배주, 이강주, 안동소주 등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화요라는 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랄까,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종량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고급 증류주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싼 가격에 국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냈더니 그것이 일부 보도가 되고 나서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많은 폭발적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술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식 위주로 몇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먹는 술 위주인데 요즘은 특히 젊은층 중심으로 혼술—혼자 먹는다

는 의미지요—그다음에 집에서 먹는다는 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소비 성향의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다양한 증류주를 맛보고 싶고 그것은 비단 국산 증류주뿐 아니라 수입산 증류주에 대해서도 많이 맛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지금 72%의 종가세 때문에. 좋은 술을 적당량 먹고 싶은데 우리는 대중주인 소주·맥주를 다량 먹는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업계의 의견 다르고 소비자 의견 다르고 정부 당국 의견 다르고 수입 위스키에 대한 생각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좀 불러서 했어야 맞는데 이렇게 법안 들어오고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지난주에 관련 협회, 업계 다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 지적 중에 옳은 것도 있습니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중소 전통주류 업체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전통주류 업체들은 전혀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시장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종가세든 종량세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종가세는 자기들 판매하는 양 얼마 안 되는데 매번 그 세금계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고 다 신고해야 되고, ‘그냥 종량세로 단순화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할 것 같은 전통주류 업체들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증류 업체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소줏값이 오를 것이냐인데, 여기 지금 소줏값이 오른다고 나왔는데 이 계산도 다 달라요. 과연 오르느냐? 이 계산은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라서 소주를 25도로 계산한 출하량을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중 소주는 17도쯤이에요. 그래서 소줏값이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오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입 위스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가 충족되는 것은 맞으나 수입 위스키 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이 혜택을 보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혹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사실 제가 이 법안 낼 때만 해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한다면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주세에 관련된 사항을 고용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또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고용진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지금 주세체계가, 우리 국내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서 역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 또 대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역차별이라는 게 과세가격과 관련된, 과세표준과 관련된 그 말씀이신가요?

○조해진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법체계가 소비 단계가 아닌 제조장에서 반출 단계, 또 수입품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수입산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국내산이 불리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세표준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나머지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게 이 개정하고는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당장은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종량세가 되면 그건 필요가 없는 제도가 되고요, 그건 종가세하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주세 세율 관련해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체 전환하자는 그런 차원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11시42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4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인지세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과세문서 작성 시 작성일 당일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종전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에서도 계약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체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 후 계약 체결이라는 절차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법도 작년에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이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부가 작년에 인지세 납부기한을 문서 작성 시에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늦춘 것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지세가 바로 첨부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또 모아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월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월별 납부하는 시스템을 큰 기본 원칙으로 다시 바

했는데 그걸 바꾸다 보니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내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고 집행상으로도 부담적
으로나 여러모로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문제 제
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은 지난해 다시
고치기 전 방식으로, 과세문서 작성일로 다시 돌
리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
셨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
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안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
고 여러 기관들하고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서 준
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여쭙보는 게 좀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게 납세자 편의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저는 봤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특별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러
게 보시는 근거가 뭔가요? 어쨌든 뭔가 기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편의 축소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여쭙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나라장터에서 입찰계약
을 따려고 하면 응찰을 하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인지세 체크를 해야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
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인지세 납부 안 하면 계
약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작년에 법안 개정할 때 나라장터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당시 기존 제도에
로 두는 게 더 낫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파악
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관련
되는 부처와 기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충분히 들어서…… 법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자주 이렇게, 혼란스럽게 개정되

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지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199)

(11시46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6항까지 이상 2건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52쪽,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
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현행 교육세법은 납세의무자로 금융·보험업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
의 납세의무자, 주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
고 이 중 금융·보험업자는 별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개정안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업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추가하고 온투업법에 따른 온투업자를 추가하려
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전체가 아닌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되고 온투업자는 온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온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되겠습
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금융·보험
업자에 추가하여 열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처럼 과
세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한 모집 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금융기관보험대리
점등은 과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교육세를 과세해 왔습니다.

한편 은행 측은 2017년부터 조세불복을 추진하였고 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보험판매수수료에 대해서 은행이 보험대리업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서 정부는 더 이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행은 은행업 외에 신탁업, 보험대리점업, 신용카드업 등 겸업이 가능하며 방카슈랑스 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수익은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한편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할 수 있는 모집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각각에 따른 모집·판매 행위에 대한 교육세 부과 여부는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157쪽, 개정안과 관련해서, 납세의무자 중 금융·보험업자를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업을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및 중개까지 포함하여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험업에 보험중개·대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대리판매로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험판매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기타 보험대리점 등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보험판매액 비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18.2%, 법인 보험대리점은 33.6%, 보험설계사가 29.6%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판매 수수료에 교육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미 보험업

자에 교육세가 부과된 수익에 대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교육세를 다시 부과하는 상황이 돼서 동일한 보험계약 및 수익 일부에 대해서 교육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의무자에 온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60쪽 박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에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온투업자의 근거를 마련했고 온투업자가 대부업자의 일부로 해석돼서, 규정이 돼서 교육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온투업자가 빠지고 새로운 온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육세법에 따라 대부업자만 해당되고 온투업자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온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3년 9월 말 현재 52개의 온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누적대출 규모는 18조 3159억 원이고 9월 말 대출잔액은 1조 718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두 번째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온투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하는 문제는 온투업자에 대한 근거법률이 바뀐에 따라서 그 규정을 반영한다 하는 취지로 입법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금융·보험업자의 보험판매에 대해서, 은행의 판매에 대해서 교육세 부과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카슈랑스의 일환으로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라는 것이 새로 나온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그게 결국은 은행이 하는 은행의 겸업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예규를 내고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 가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영역에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세 부과대상, 은행이 보험상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판단은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과를 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이번에 은행이 하는 보험 판매업도 부과대상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보험업자하고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보험료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과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게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수입의 원천과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이중과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15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원칙적이고 중요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개정 세수효과를 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가 1억 원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온투업자 얘기신가요?

○진선미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온투업자 숫자가 아마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전문위원 김경호 온투업자는 대출을 중개해주고 중간에 수수료 받는 부분이 이 수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한 교육세라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더 작은 규모가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기획재정부제1차장 정정훈 숫자 자체도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규모 자체도 작아서, 저희들은 예정처에서 뽑은 세수보다 조금 더 많게 보고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논리가 굉장히 궁색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재정부제1차장 정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대리점이나 중개사들은 수수료를 받을 때 왜 과세대상에서는 빠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장 정정훈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업으로 보려면 그 보험 계약의 본질적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세하는 게 맞고 만약에 중개·알선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보험업의 부대업으로 본다면 그 수수료도 과세하는 게 맞지요. 그렇다면 대리점이나 중개사도 과세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장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논리를 보면 방카슈랑스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빼겠다, 세금이 부족해서 세수 확보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려면 다 과세하자 이렇게 가든지.

○기획재정부제1차장 정정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 과세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수익만 과세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중간에 다른 외부 대리점이나 은행이……

○유동수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에 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중개·알선 수수료에도 과세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지, 아마 이 대법원 판례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결했다고 저는 봐요. 판결문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백그라운드를 보면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보험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과표를 정했으면 됐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적 거래에까지 과세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결로 보이거든요, 이 판결 내용이.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들한테 주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지적 부분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교육세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등의 금융기관은 그 금융기관들이 광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들도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게 아닌 통상적으로 판단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세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대리점업, 보험대리점업이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사실 부가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자가 아닌 금융기관 간에 주고받는 수수료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낮은 세율로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보험수수료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등의 납세능력이 있는, 충분히 그것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좀 더 공적인 의무가 있다 하는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과세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세법 체계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동수 위원** 장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리점이라든지 보험중개사를 하려면 사전적으로 등록 내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거기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부대업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과 대리점이나 중개사가 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실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 개인 아무나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은행이 하든 대리점이 하든 전부 다 어떤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거나 그런 분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세를 안 하고 이 부분은 과세하고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결국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세를 부과할 때 금융·보험업에 대해서 도입을 했던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회사지요, 금융회사. 그 회사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를 내라는 취지로 운영을 하는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겸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교육세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면 과세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위 자체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도 하는데 왜 여기는 과세를 안 하고 여기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정부로서는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에 따라서,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를 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부안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뒤의 실무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입법정책적인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반가워서 그런데요. 저는 일단 온투업자 추가하는 것은 조문 합리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방카슈랑스도 기준이 맞느냐는 논쟁은 가능하지만 실질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세법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어떤 종류의 AS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개정안이고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각종 세원에서 조금씩 떼어 와서 교육세의 재원을 만드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은 없는가 이것을 여쭙어보고 싶어요.

교육세법의 목적을 보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금융업법, 보험업법, 대부업법, 개별소비세, 교·에·환, 주세에서 조금씩 떼어 오는 게 과연……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GDP의 몇 %를 교육재정으로 한다든가 이런 월

원 안정적일 방식의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부합하게 만든다고 하는 종류의 세법 개정 이런 고민은 재정 당국에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교육세가 목적세지 않습니다. 목적세고 대부분이 어디 부과를 해서 떼든지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에 추가를 하든지 이런 방식인데 교육재정, 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의 방식이…… 말씀 주신 취지가 목적은 거창한데 조달하는 방식이 너무 그렇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큰 변화를 두어야 될 필요성까지는 현재 정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면 기술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하면 이것이 금융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사실 교육세에 이걸 넣고 안 넣고가 세수나 이런 데에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원칙의 문제, 그러니까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은행이 하는 다양한 업무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문제니까 저희들이 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교육세가 앞으로 어떻게 크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체계상의 고민은 있을지 몰라도 아까 앞에 보여 주신 것처럼 세수효과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막 급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166페이지의 전문위원님 지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둘째 부분의 재정비, 과세표준의 통일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는 의사와 그 안을 한번쯤 더 고민해서 가져오셔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정할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류성길** 그러면 이 사항은 다음에 관

련되는 자료를 좀 더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162쪽,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을 순손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유동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64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매각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변경해서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법에 통일성 있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교육세법상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금액이 달라지며 또한 투자이익보다 투자손실이 큰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둘째, 파생상품과 외환 거래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는 반면에 유가증권 매매거래 시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파생상품·외환 거래에 따른 순손익 이외에는 모두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영역에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타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서 도입한 거래세의 일종으로서 교육세 도입 시 법인세와 같은 순손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가세처럼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향후 교육세 과세표준 체계의 근본적 정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세 최초 도입 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었지만 파생상품·외환 거래 도입으로 순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과세표준 산정에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세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준용하여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와 교육세가 일치하지만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익금액 판단의 어려움은 물론 금융·보험업자가 같은 신고기한 내에 교육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을 각각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으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유가증권의 매각 수익을 순손익으로 변경하려는 개정 취지와 달리 유가증권 매각, 파생상품 거래 및 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함께 통산한 순이익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가 일종의 부가가치세처럼 수익, 그러니까 일종의 매출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외형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저희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순수익으로 가면 일종의 손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과세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라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그러면 거래적 개념으로 보려면 파생도 거래로 보세요, 거래로. 파생도 그냥 거래로 봐서 과세를 하세요, 이것도 거래로 봐서 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거래 부분에 맞추어서 과세를 한다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할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거래로 보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거래는 거래가 아니라 손익을 통산해서 보겠다고 그러고 이게 논리가 잘 안 맞아서……

어쨌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정부 측에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연구용역을 한번 발주하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과세가 세수 확보적 측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에, 사실이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래에서 수익 날 때는 과세하고 수익이 안 날 때는 과세 안 하는데 그걸 통산으로 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손실이월공제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순손익으로 변경할 때 세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연간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양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상으로 교육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12시12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100항까지 이상 4건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68쪽,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농특세법은 94년 제정돼서 제정 당시 2004년까지로 설정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효력기한을 연장해서 현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다시 10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김형동 의원님 안은 16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34년까지 되어 있는데 40년까지에 관련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농특세 유효기간을 계속 10년씩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으로 안을 냈고요.

40년은 왜 40년인지를 오히려 제가 좀……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면 10년으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농특세법에 반영이 안 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농특세 분납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는 부분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74쪽, 유사 입법례를 보면 분납 허용 기준액, 분납기한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분납액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마지막, 다른 법률 유사한 내용의 체계랑 맞추는, 현행 체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속도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어촌특별세법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283항까지 이상 1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자료 3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권 소위 자료 I 쪽입니다.

먼저 23년도에 일몰 도래한 조특법에 대한 연장 현황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71개 항목 중에서 정부안 기준으로 적용 종료가 6건, 제도 수정이 7건, 적용 연장이 58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3년에 일몰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에서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유가 안정세 등 정책 목적 달성과 일반 주유소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일몰을 종료하였고,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전무하여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는 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고, 네 번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다섯 번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전무하여 일몰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용계좌 개설 수와 거래 금액·건수 등이 증가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과 김형동 의원님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특례 제도는 2002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작년 세법 개정에서 적용기한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 동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특례 적용 시 미적용되는 비과세·감면·소득 공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에 직면하는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9%의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세법 개정 당시에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한 것은 내·외국인 간 세율 격차를 줄여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이후 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인상되면서 고소득인 내·외국인 간 세율 격차가 2016년 21%p에서 21년 26%p까지 더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내·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1년도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과표 1억 원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동 조세특례의 수

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 간 수직적 형평성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적용되는 비과세·감면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가 사택제공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택제공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었기 때문에 이 적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2020년 정기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사택제공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명백히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차관님, 앞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왜 1년·2년·3년…… 5년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될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1년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연장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조항이 도래했을 때 연장하는 연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년을 나름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2년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20년, 21년이요. 2년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도를 바꾸고 첫째 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 돈은 그다음 해에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납부된 통계가 2년 차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3년 차에 가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나오니까 어떤 제도의 일몰을 연장했을 때 일몰기간 동안의 효과를 분석하려고 하면 2년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안 보면서, 앞에서 논의한 것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몰 연장의 기본은 3년을 원칙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변수를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일시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던 것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해소되면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움이 조금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한 해 한 해씩 이렇게 연장하는 조치들이, 한시조치 관련해서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법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소득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한 5년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내 소득세가 어떻게 징수되는지는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측가능성을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준점인 3년보다는 조금 길게 5년으로 연장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부안의 취지는 다 설명이 됐다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 내국인·외국인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간의 소득 수준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 문제 이게 있는데 세율을 19% 단일세율로 적용하다 보니까 내국인 근로자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이면 받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세율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명목세율보다는 내국인에 비해서 더 내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소득 수준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보는 구조입니다만 점점 고기술, 높은 기술을 가진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약간은 소득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기술을 가진…… 뭘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급 인력들이 아닌 일반 인력, 외국인 인력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조해진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4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축 표시해 주셨는데 고소득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경우에 실효세율이 좀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길래, 그게 적용은 전체가 다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 대해서도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해진 위원 이 제도의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쉴 새 없이 임기응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내국인과의 역차별 또는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서 일하면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 또는 3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유인이 되거든요. 한국에 와서 일할 만한데, 전체적으로 공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싶은데, 농어촌 또 공장 근로자들, 외국인노동자들 쓰는 고용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결국 국내의 근로자들을 쓸 경우하고 그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가지고…… 본래 외국인근로자들을 쓸 때 임금 경쟁력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국내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 때문에 쓰는 거고 그게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쟁력이요 수요인데, 그런데 그게 좁혀져 가고 이런 추세로 가면 걱정만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조정이 없으면 우리 국내 사용자들의 임금 부담도 굉장히 커져 버리고 그 반면에 외국인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로또처럼 되어 버리는 거지요. 하여튼 취업 기회만 얻으면 대박이니까 과열 경쟁, 거기에 또 불법도 개입하게 되고 많은 비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경쟁해 가지고 임금을 팍 올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로또지만 국내 근로자들과 격차가 줄어들고 또 차별도 있고 고용주들의 사용 수요도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기계화라든지, 우리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기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국근로자들 입장을 보더라도 이걸 지금 정부가 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적정한 선에서 조정, 한국에 오는 것이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지만 로또 수준이 되거나 또는 한국인 근로자들하고 격차가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역차별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좀 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역차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말씀 주신 건, 아마 지금 건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그렇게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애로를 해소하는 기업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조해진 위원 농어민도 그렇고 굉장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쓰시는 분이 다 마찬가지로인데 제도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이 부분은 따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달라라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ILO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지도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은 외국인근로자를, 그러니까 고급부터 또는 실제 지금처럼 수요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대폭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비자 제도라든지 인원의 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굉장히 빠르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 여건을 반영을 더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 문제로 그런 부분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여기에서 역차별 문제는 그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작년에도 이게 한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외국인근로자로 하면 한 58만 명 됩니까? 58만 5000명인데 이 중에서 소득 구간으로 보면 1억 이상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고소득층에서 엔지니어가 도대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정확한 통계는……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또 기술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현재 어떤 기술 때문에 우리가 영입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없어요.

한국GM이라는 회사가, 2008년도 미국GM이 파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300명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직원, 특히 임원들보다 3배 이상의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자들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구조조정된 사람들, 갈 데 없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거기를 보면 경영이나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지 한국에 와서 무슨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한국 임원하고 미국GM에서 온 사람들하고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나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대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주거비, 교육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급여로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소득에. 그래서 아까 특히 무슨 감면 하는 데 외국인들은 혜택을 별로 못 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만 같은 데가, 거기가 지금 최고세율 40%를 외국인한테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보면 항상 낮은 데만 찾아서 어떻게 세금을 깎아 줄까 하는데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가 17%, 22% 맞아요. 그런데 대만은 40%거든요. 중국은 45%래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홍영표 위원 중국은 45%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대만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그게 확인된 사람들, 특별하게 기업이든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어떤 기술인력

을 우리가 영입했을 때 주는 방식으로 전환,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영원히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거는 정말 조세 형평성에서 너무 맞지 않고, 더구나 한국에 와서 아주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경영이나 이런 쪽이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도 웬만한 분야는 한국에서 기술인력이 충분하게 다 확보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연장하는 거에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꼭 기술 분야, 우리 국가 전략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저도 홍영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2021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실제 외국인 고용 인원 증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20년에는 719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731억이고 2022년에는 876억이고 2023년에는 1082억…… 1000억이 넘어가요. 2024년에는 1151억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해서 연간,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이상을 사실상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특혜를 줘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국내의 기술자들이나 국내 우수인력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또 오히려 내국인 고용을 더, 내국인 우수인력들을…… 우수인력들은 지금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고 내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국책연구원이 나서서 아예 장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폐지하거나 거의 없애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별로 실효성도 없고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10억 이상인 외국인근로자가 36.6%고 5억~10억이 27.3%고 3억~5억이 24.5%라는데 이런 고임금 과표를 받는 정도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라 하면 대부분 대기업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대기업한테 외국인근로자 고용했다고 그래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에 왜 1000억 이상, 1100억씩 이렇게 국민 세금, 혈세를 쏟아부어야 됩니까? 이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지금 R&D 연구비 지원에서도 외국인 쪽으로는, 외국 쪽으로는 대폭 늘었어요, 내년 예산이. 그리고 ODA 이것도 아주 대폭 늘렸고요. 해외순방 다니는 것, 해외순방 용역비도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외국인이나 외국에, 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쪽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립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 죽어 간다, 경제 파탄이다 이라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도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통계에 의하면 세계 혜택을 보는 데는 거의 다 대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연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게 일몰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간 또는 수년간, 수십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점점 줄여 가서 3년, 2년, 1년 해서 일몰되는 형태로 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늘어나고 계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7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로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은 동 조세특례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서 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 부안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동 조세특례의 기한 연장 등 확대 적용 필요성 과 관련해서 첫째,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 단절여성의 취업 유인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구인 인원 대비 미채용인원 비율인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6.7%에 불과하지만 300인 미 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13%로 사업체 규모가 영 세할수록 미충원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특히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 지 확대·적용하려는 고용진 의원님 안은 동 조 세특례의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고 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이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 다.

셋째, 대기업 대비 중소·중견기업의 임금비율 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60% 미만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라는 분 석 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청년 등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취업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정성이고 급여수준은 약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셋째, 동 조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 하려는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

한 채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써 취업희망 선호도도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출 초임연봉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중소기업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중소기업 의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중소기업 취 업에 대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고 3년 연장안을 정부가 제안을 했습 니다.

의원입법으로 나온 두 가지 있습니다만 감면 한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감면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을 해 서 당분간 제도를 2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내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제일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점을 감안 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이 사람을 구 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만 중소기업에 취업 유인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현재와 같은 중 소기업으로 대상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요.

고용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기한 연장뿐 아니라 대상을 중견 기업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마이크 다시 한번 체크해 주 십시오.

○고용진 위원 우선 육성으로 좀 하겠습니다.

물론이예요.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요, 중견기업 은 좀 낫고 대기업은 말할 것 없이 좋고. 차례대 로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효과성 문제예요. 아무리 제도 만들어 놓고 해도 젊은 구직자들이 여기 호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유인책으로 별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은 제도 중에…… 아니, 밑에도 안 되는데 위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건데 조금씩이라도 대상도 좀 넓혀서 중견기업이라도 구인난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게 하고 또 봐서 그런 것이 문제라면 그 밑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마이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고용진 의원님 안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중소기업에 갈 인력들이 중견기업으로 가서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 희망자들은 당연히 기회가 오면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중견기업 가면 소득세가 감면되니까 가고 아니면 중소기업 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젊은 이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중견기업에 갈 수 있다면 국가가 그걸 장려해 줘야 되는 거지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 대신에 중소기업은 또 다른 형태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중견기업에 갈 젊은 이들이 대기업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들 말씀 취지는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세제를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 규모를 가지고 어떤 기업에 근무를 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어떤 기업에 근무하면 세금을 안 깎아 주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소득의 규모나 아니면 그 근로소득자가 어떤 부담이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인데 이렇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다라는 이유로 그 근로자의 급여와 관계 없이 그렇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저희들이 워낙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의 애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세제에서 굉장히 원칙에 안 맞는 예

외적인 제도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단의 예외적인 제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실무자와 기재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법 제목이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세제실장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면 정부가 그런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정안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사항 없으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3쪽,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 정치자금의 거주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서영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을 허용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소액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7년도 이후 연도별 기탁금 실적은 기탁금액 및 기탁인원 모두 감소 추세에 있고 연도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의 경우 연간 변동폭이 커서 안정적인 정치자금 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둘째, 정치자금 기부금과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줌으로써 사실상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우회적인 정치자금 기부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있는데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이들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명의를 바탕으로 한 거주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행해질 우려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 부분에 제기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 다른 일반기부금하고 다르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이 그 부분 전체를 지원하는 모양이 돼서 아주 예외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정치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이 내신 안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기부금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의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고려 사항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세액공제다 보니까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아예 이것을 바우처 제도로 운영해서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라든지 가사 노동자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정치기부금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

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세제가 아닌 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혜영 위원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세액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EITC처럼 환급까지 해 주는 기부금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장혜영 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강도까지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부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소득이 조금, 어쨌든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게 저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받는 게 과연 기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의사표현, 정치인에 대한 후원, 굉장히 좋은 목적이고 장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100% 전액 돌려주는 기부 제도, 기부 세액공제 형태에 있어서는, 차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뭔가 정치적인 후원과 의사를 표현하면서 본인과 사회가 같이 정치인과 정당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그러면 좀 더 넓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내고 있는 세액이, 솔직히 소비활동을 하는 주체들이라고 한다면 부가세의 형태로라도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평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고개를 끄덕임)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 입장이 그러시다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실장님하고 문제 인식을 같이해요. 맨 처음에 10만 원 한도까지 사실상 전액 세액공제잖아요. 그러면 기부는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

랜 시간 누적되면서 약간 변형되는 것도 많아요. 이런 점은 기재부 입장에서의 의견 전달도 있어야 되고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한마디 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정치자금 기부금 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세액공제 형식으로 100% 돌려주는 정치자금, 차라리 정부에서 그냥 예산으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적으로도 더 복잡하고?

아무튼 그런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행법은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조세특례는 12년 말 이전 가입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특례대상자는 없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작년 말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가 사용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만 18세를 18세로 바꾸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2012년 이전 기존의 가입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만 나이 표기 법률 정비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과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서 동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와 관련해서 추후 동 조세특례 적용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 현행의 법문언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만’ 자가 들어가 있는 세법을 죽 하다 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만’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기본법 바뀐 취지를 봐 가지고 조정하더라도 효력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 다른 사항 없으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 납입액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김영선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쪽입니다.

김영선 의원안은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현행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해서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납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무주택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둘째, 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오랫동안 조정 없이 유지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연간 14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정 없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제 한도 240만 원을 적용받는 인원이 21년 기준으로 적용자의 13.3%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되는 한도를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 한도의 상향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특례 대상자의 실제 공제 한도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합산 한도액이 2022년에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합산 공제액은 2013년 이후에 계속 5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21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도액까지 받은 인원은 약 3.8%에 불과해서 개정안에 따른 수혜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14년 이후에 조정이 안 됐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측면 하나하고 서울, 부산의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청약예치금 기준이 현재 300만 원인 점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세 가지 소득공제 합계액을 800만 원까지 올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말씀하신 13년 이후에 500만 원 유지된다는 점과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 부담이 상당히 크게 금액적으로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도를 올려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생각이 없지만 역시 이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으로도 청약을 한도까지 매시범으로 넣는 비율이 13.3%밖에 되지 않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4%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내용만 보면 총선용 홍보물에 한 줄 넣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일감으로 느끼기에는요.

게다가 당장 방식도 소득공제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다가

혜택을 몰아주게 되는 정책이고, 이런 분들에게 주택마련의 압박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사실상 청약이라고 하는 게 로또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뭔가 주거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기보다는 상품성 좋은 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항도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공모 부동산펀드 및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연장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모 부동산펀드 및 공모 리츠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되고 투자자가 이를 분배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모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 이내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3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내용을 도입하였고 23년 말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모 부동산펀드 및 공모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연장하고 보유기간 합계 3년 이내에는 다른 공모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의 전환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조세특례를 연장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모형 위주의 부동산간접투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만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성장 필요성이 약화된 점 그리고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증대에 대한 행태 변화유인과 효과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동 조세특례의 일몰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의 자금유입이라는 조세특례 본래의 목적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전환가입 또는 해지 금지라는 제약으로 인해서 투자 이후에 3년간 수익률 제고가 제한되는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공모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 조세특례의 도입 당시 전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는, 해당 공모 부동산펀드 및 공모 리츠에 3년간 안정적인 투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펀드 및 리츠와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공모 부동산펀드나 리츠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사업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재정만으로 이 부분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어서 이걸 촉진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했습니다.

일부 평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원 이후에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 부분이 좀 보이고 있어서 한 3년 정도 연장을 하면서 이 제도의 지원의 효과를 한번 더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서 일몰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정부가 좀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더 두면서 이게 효과를 갖는지를 보자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해당 특례가 지금까지 특별히 공모투자를 촉진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라임사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 공모투자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세특례를 연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런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선 일단 일몰을 하고 그런 방면의 신뢰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서 다시 조세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미 조세지출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KDI의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일몰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 도입 이후에 공모 리츠의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는데 투자자들의 특례 활용도가 낮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세계 대형 증권사 공모 투자고객 중에서 본 특례 이용고객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세 지원을 통해서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효과가 매우 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이 제도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돼서 저는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의심층평가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일몰이 적절하다고 분석을 하면서도 평가 자체에서도 제도 도입 후 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의 평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정도 더 해 보고 다시 한번 심층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지막 단서가 붙어 있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직접 부동산펀드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 공무원이 지금 출석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국토교통부에서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예.

○소위원장 류성걸 직·성명 말씀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국토부 전세지원단장입니다.

토지정책관 담당자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공청회로 참석이 안 되어서 제가 대신 참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안 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한 2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 7억 원 정도의 감면 사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초기 3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직 신청이 안 됐고 이제 23년 말이 끝나야지만 자기 상품에 대해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고려해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는, 개인들이 부동산시장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좋은 취지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을 깎아 주면서 일반 국민들이 간접투자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투자시장이 대부분 연기금과 기관들이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간접적으로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심층평가에 관련되어서 전문위원 의견은 일몰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서가 붙었다 하니까 그 자료를 요약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제도 도입이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저금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 등 투자상품 매력도가 낮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계 유동성이 커서 분양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맞지요? 시중 유동성을 흡수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리츠 배당 투자 매력도가 매우 약화된 거지요. 이렇게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일몰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요,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맥락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대상으로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모 리츠라는 것이 결국은 공모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 수익 얻는 방식 중에 일종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을 투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어떤 유인의 기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걸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올해 9월 때지요,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하겠다고, 금융자본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자본을 더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금융자본, 특히나 투기성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노인요양 자체를 부실화시키는지에 대한 대단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노인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거나 금융자본이 이걸 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종류의 투자를 더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저는 이 제도는 정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강해지네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합시다. 이 사항은 심층평가 보고서를 요약 정리를 잘해서 다음 심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세법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나와 계신데, 펀드하고 리츠하고 차이점이 뭐니까?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펀드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신탁형으로, 그래서 자금을 약정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전문적으로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면 리츠의 경우에는 오로지 하나, 주식회사형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로 참여해서 일정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인허가 기관의 문제인데 하나는 금융이고 하나는 국토부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예.

○**유동수 위원**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리츠를 국토부에서 컨트롤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국토부에서 관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츠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인허가권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된 사항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항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대상 출자금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 등 1명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이용과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첫째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둘째, 동 제도의 확대를 통해 상호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2년 이후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가 10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34쪽, 다만 실제 조합 등 출자자의 상당수는 비과세 한도액인 1000만 원과 무관한 소액 출자자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댓값은 1억 원 내외지만 중간값은 농협이 100만 원, 신협이 25만 원, 새마을금고 20만 원으로 대부분 소액이고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비중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10%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둘째, 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동 조세특례 실적이 300억 원을 초과하여 의무심층평가 대

상이 될 정도로 조세특례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출자금은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출자자의 자산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에 대한 출자금 또 예탁금 이것에 대한 비과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이슈고요. 점진적으로 좀 비과세를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년간, 그러니까 25년, 26년 이후에 5% 분리과세 그리고 27년부터는 9% 분리과세, 이렇게 의지가 지금 법안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도를 또 올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반영된 취지나 그동안 논의된 취지로 봐서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액 출자자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이하,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강준현 위원** 1000만 원 이상 출자자 수가 113만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1000만 원 이상이.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은 보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상은 일차산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농어민이 많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산 위험도 말씀 안 하셨지요. 그 문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이것은 아까 주요 내용에도 들어 있는 말씀들인데 하여튼 농어민분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재 조합도 재무구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차산업 종사자한테 혜택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합의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수의 농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수의. 특히 또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물가만 하더라도 2.6배나 올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2000년에 8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9%, 60%…… 한 20% 정도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농협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실제로 한 180억 정도의 농가소득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 분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출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현재의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출자금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농업인의 실익, 지원비가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고, 여하튼 간에 농어민을 위해서는, 소득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이 부분이 농어민들의 소득, 어떤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취지로 아마 도입이 됐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면 이번에 출자금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예탁금 비과세 부분이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 3000만 원 한도의 예탁금 비과세를 사실상 세일즈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예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들의 자금 유치와 운용과 관련해서 다른 금융권과의 어떤 자금 이동 문제도 여러 가지가 제기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탁금이든 출자금이든 한도 비과세하는 부분을 물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늘려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은 하나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제안된 것은 예탁금 부분이 아니라 출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확충하기 위

해서 넣는 것을 좀 지원해 달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의 논의하고는 다르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전체적으로는 늘리지 않으면서 안에서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는 액면가액 1800만 원에 배당률 15.1%를 곱하면 272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농업인은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배당률 3.5%를 곱하면 35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글썄요, 농업인이나 근로자나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형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1800만 원, 11%가 될 말씀하시는 건지……

○배준영 위원 15.1%.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15.1%. 1800만 원은 어디……

○배준영 위원 액면가액이요, 액면가액 배당률.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어디, 저축상품 액면가요?

○배준영 위원 우리사주요, 우리사주.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아, 우리사주요?

○배준영 위원 예, 우리사주.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우리사주하고 농어민 지원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제도가 아까 차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단순히 비과세를 3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5%, 그 이후에는 9%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최근에는 그런 논의가 거의 사라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수협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마을금고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비과세 상품을 더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양한 저축상품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농협에 가든 하나은행에 가든 자기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은행 간에 경쟁을 하면 되지 왜 농·수협만 따로 이렇게 비과세 상품을 운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했

을 때 적절한 수준의 비과세 상품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더 많은 의견을 얻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나 여러 가지 보상 등등의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걸 비과세 상품하고 바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이렇게 1000만 원이 됐을 때 요구하는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축협이나 수협이나 또는 그 조합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좀 늘려 달라는 건의라든지 이런 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농협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농협에서 있었습니까, 농협의 조합원들로부터 있었습니까? 농협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출자금액을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민금융기관으로 한번 분포를 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포를 한번 내 보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1금융권하고 비교해서 단순히 서로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있어서 선택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봐도, 제가 일부 금융권들을 비하하고자,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고 서로 부조하는, 상호부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가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1금융권들의 대주주 지분들이 대부분 외국계 지분이 많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금융 도움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자만 비교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어떤 모형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실장님 비교하는 게 거의 금리 비교로만 얘기하시면 상호금융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의 취지를 고민하지 않은 발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상호부조적 측면에서 여기에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에 비해 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일반 금융기관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취지에 비해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조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아까 중앙회 쪽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단위조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지역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요. 지역하고 밀착되지 않은 금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 관련된 사항을 전체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고, 진선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도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 다녀 보면 서울이 어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쪽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고객층을 보면 일반 서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산출액 기준으로는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한 113만 명 정도, 저희가 좀 추측을 해 봤는데 그 정도의 인원들이 실제로 이걸로 혜택을 받는 금액이 개인당 한 2만~3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형평성이나 서민들의 어떤 지원책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아까 유동수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런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금융이 더 세련되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차별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어떤 지점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가 가끔씩 말썽들이 일어나서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어려우면 또 그것을 병합해서 자산의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자체적인 제도도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선진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렇게 금융제도가 발전하는데 이쪽에 굳이 더 혜택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탄실하게 좀 보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자료 요구……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출자금 비과세를 예를 들어 2000만 원 할 때, 3000만 원 할 때 늘지 않는다는 전제하로, 현재 출자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할 때, 3000만 원 때 조세에 어떤 정도 영향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현재 계산한 것으로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유동수 위원 3000만으로 할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3000만 기준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전체 다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 사항은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설명하시기 전에…… 청년 재산형성 관련 된 자료가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녀 관련된 사항들, 이 자료는 준비해 주십시오, 뒤에 계속 나오니까. 청년 재산형성 관련된 자료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바로 배포를 다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4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방부는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5%의 우대금리에 더해서 재정지원을 통해 1%p의 추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3년 71%고 내년에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이자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정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개인별 적립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적용기한만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개인별 한도액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병의 자산형성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제도 도입 당시보다 병사 봉급이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별 납입 한도를 병사 봉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해서 동 제도가 출범한 2018년에 비해 23년 병사 봉급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현역병의 여유자금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높은 기본금리 외에 우대금리와 원리금 매칭지원,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4종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병사 월평균 지출금액—21년 기준으로 월 30만 3000원쯤 되겠습니다—을 감안할 때 질병·이병의 경우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부모 용돈을 활용하는 등 대납을 통한 비과세 남용 또는 편법적 절세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하여, 23년 12억 원의 조세지출과 6584억 원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4년에는 12억 원의 조세지출과 1조 3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와 관련해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편, 동 개정안 제출 이후 기재부와 국방부는 24년은 현행과 같이 월 납입액을 40만 원으로 유지하되 2025년부터는 월 납입 한도액을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최근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현역

병 등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이를 제대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납입 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병 월급 200만 원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서 이 납입액을 정부가 내년까지는 40만 원 그리고 내후년에 55만 원 이렇게 납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도 지금 50만 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정부의 계획을 좀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40만 원이지만 25년부터는 55만 원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장병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정까지 투입해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입금에 대해서 비과세 기간은 한 3년 정도 일몰 연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재산형성 관련된 사항 정리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지요. 그리고 자녀 관련, 아동 관련된 사항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혜영 위원 의견 드릴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기본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요, 여전히 군인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족분을 적금, 매칭금 이런 방식으로 메워 넣어야 되는 한계를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들.

○양경숙 위원 40만 원보다 더 올릴 수는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당장이요?

○양경숙 위원 예, 4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25년부터는 55만 원으로 올리는데 한 해만 기다려 주시면 55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때 법을 또 내는 건가요,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니요, 이번에 그

렇게 일정에 맞춰서 고쳐서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전문위원 김경호 정부가 수정 제안한 내용입니다.

○진선미 위원 시행령으로……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이 법에서 정부안을 정부가 다시 수정 제안한 내용입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2025년부터 55만 원으로 한 이유는 뭐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병사 월급하고 지원금까지 합쳐 가지고 205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사 월급은 25년부터 150만 원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지원금은 55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합쳐서 205만 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저희들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비과세 한도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되는 게 아직 예산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닌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전제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하냐 그리고 매칭비율을 몇 %로 정하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정해야 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예산의 편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거기에 우리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의 방식이?

○전문위원 김경호 여기 법에서는 납입 한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예산 관계없이, 만약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매칭비율을 100%가 아니라 다시 7%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입하는 한도를 25년부터 가령 55만 원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주신다고 하면, 그다음에 100% 반영해서 그만큼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그 정도가 안 된다 싶으면 매칭비율을 100%를 못 하고 그 밑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예산 조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틀린 거지요. 이런 법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그때 가서 법안을 제출을 해서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개별 금융기관별로 20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한도가 40만 원이다 보니까 2개의 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40만 원에서 추가로 한도를 내년에 바로 올려 버리면 어쨌든 지금 들고 있는 두 개의 통장 가지고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열심히 장병들이 금융기관을 쫓아가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짜리 또는 15만 원짜리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가지고 실제로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너무 기간이 짧다 보면 오지에 있고 전방에 있는 분들이 쫓아가는 데, 계좌 개설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40만 원을 유지하면서 매칭비율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고 그다음에 25년의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이 예고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은 또 예산실에서 결정을 해 주실 거고 미리 통장을 개설하는 데,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나 장병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그러니까 현재 정부안은 한도는 안 올리는 겁니다. 40만 원 그대로 한 거고 우리 심사 과정 중에서 25년에 55만 원으로 다시 수정 심사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도 같이 지켜보고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 금융상품 세제지원제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뒤에 계속해서 심사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2쪽,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일몰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만기 3

년 이상 5년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600만 원을 한도로 그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윤창현 의원안은 가입의 소득요건을 총급여액 5000만 원에서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장기펀드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추정세액이 부과되는 예외사유에 전환가입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환가입을 허용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는 청년층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3년이라는 전환가입 제한기한을 둔 취지는 해당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여 관련 펀드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장을 키우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5쪽, 일몰을 연장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21년 정기회에서 근거가 마련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실제 상품 출시일이 23년 1분기로 늦어짐에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형 장기펀드의 출시를 인지하고 가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할 때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형 장기펀드는 위험감수형 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는 저소득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동 상품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요건을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청년형 장기펀드와 유사한 목적인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도 총급여액 75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요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소득요건을 확대하는 경우에 청년층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융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3월에 실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가입하는 기간을 주기로 하고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1년밖에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1년 연장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에 가입을 한 사람은 3년 이상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 펀드에 3년을 계속 넣는 게 이 법의 취지냐, 중간에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 간에 청년들이 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까지도, 한번 이 펀드에 가입했으니까 3년을 꼭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펀드 내에, 같은 취지의 펀드 간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쪽으로 그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윤창현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소득기준을 좀 높이자 하는 건데 이걸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청년도약계좌 등등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그냥 한 1년 연장하는 걸로, 2년 정도 주는 걸로 그냥 마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또 소득요건까지 개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만약에 21년도에 제가 조세소위에 있었으면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게 현재 양극화나 금융환경 안에서 제도 설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청년에게 자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일인가라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의 철학적인 측면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힘을 써야

지,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에 투자를 해라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소득기준을 올리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바하고도 별로 맞지 않아서, 게다가 은행들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이걸 1년이라도 제대로 시행을 해 보기 위해서 늘리자는 취지로 읽히는데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저는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지금 1년 연장하고자 하시는 거기에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원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납입금액이 한 73억 정도 되고요. 계좌수가 한 6200개 정도 개설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 가입자들에게 실제로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 보신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차피 내년 말까지 넣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아직 가입 못 하신 청년들이 있을 텐데 상품이 1년밖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원래 약속했던 2년을 지켜 드린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게 지난 정부에서 출시된 상품인데요. 어쨌든 청년들한테 한 2년간 정도는 뭔가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1년밖에 기회를 못 드려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약속을 계속 지켜 가는 의미입니다.

○**양경숙 위원** 실적이 이렇게 낮습니까? 1200 계좌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6200입니다.

○**양경숙 위원** 6200? 6200도 많지가 않다고 보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많지는 않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청년들한테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다고 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청년희망적금 쪽에,

아무래도 이게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청년희망적금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금년에 새로 청년도약계좌라는 게 출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동시에 출시되면서 아마 이 펀드 쪽이 약간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장기로 하면 이게 몇 년 정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3년은 유지해야 됩니다.

○**유동수 위원** 보통 만들어지는 상품이 몇 년 정도 상품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보통 저희들이 저축상품을 만들었다고 할 때는 2, 3년짜리로 만듭니다.

○**유동수 위원** 3에서 5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유지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동수 위원** 아니요. 펀드를 장기라고 표현하려면, 가입기간은 2년 줬지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3년 이상을 저희들이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류성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작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을 22년 말로 종료하고 이를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도입하였고 2023년 6월 실제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 바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액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2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형 적금상품으로 해당 계좌에 월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적립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책상품입니다.

참고로 2023년 9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42만 명 수준으로 당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식, 채권, 예금이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적금 형태의 상품만 출시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청년들이 만기환급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2년 2월부터 2년 만기로 운용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4년 2월로 임박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약 200만 명 이상이 일인당 약 1000만 원 내외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당 청년들이 만기환급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으로 형성한 만기지급금으로 보다 큰 규모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만 청년층의 납입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취지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은 청년층의 정기적인 납입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납입금을 보전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납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가입자의 가입 이후 2년간 청년도약계좌 최대 납입 한도액은 1680만 원으로 변화가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추가 납입이 제한되게 돼서 가입자의 일시납입 이후의 소득을 바탕으로 한 자산 형성이 일정 기간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납입 한도 외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 일시납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로 인해서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층은 목돈 소요가 많은 연령층에 해당하는데 5년간 유동성이 제약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은 상대적으로 그 유인이 덜할 수 있고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하고 최근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하고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고요. 지금 연 84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일시금으로 돈을 찾아서 넣으려고 그러면 법상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어서 5년간 42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체 청년도약계좌의 실링은 유지하되 한 2년간에, 한 해는 지금 한도보다 조금 많이 넣고 둘째 해는 조금 줄어들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한 2년간 연평균 한 840만 원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적금을 만기에 일시로 찾는 청년들이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니까 정부 측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아까 표를 나눠 드렸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게 됐을 때에 그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49쪽 중간에 기존 납입 한도 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해 주면 결국은 5년간에 4200만 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의 큰 틀을 또 흔들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재산을 형성해서 앞으로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결혼도 하는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안과 김병욱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현행법은 청년층 또는 저소득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금융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이와 같은 저축 등의 과세특례는 공통적으로 가입 등과 관련해서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조세특례의 특성에 맞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요건을 두고 있고,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공통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즉 1월부터 7월 기간 중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저축 등 과세특례의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안도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입 대상자의 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 등의 자산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보다 적은 소득 수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육아휴직 시에는 급여가 휴직 전에 비해서 적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역시 보다 적은 소득 수준으로 금융상품 가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자가 현행보다 조기에 저축 등 과세특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54쪽 셋째,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월과 7월 사이에 저축 등 과세특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 가입을 일단 허용한 후에 직전 연도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직전 연도 소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단해서 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특례를 취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동 조세특례가 저소득 청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청년 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소득 수준보다 전전 연도 또는 육아휴직시의 적은 소득으로 저축 등 과세특례 상품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적어지는 육아휴직 시점에 동 상품에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최소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김병욱 의원님 안도 그런 것 같고 저희도 그것을 포함시켰고요.

소득을 어떻게 기산하고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은, 현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정보를 가지고 상반기에 가입했을 때는 되는데 그게 지나서 작년 것을 확인해 보니까 넘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건을 못 맞췄니 맞췄니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가입 당시에 가용한 소득정보를 가지고 해당이 되었으면 그것은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입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나 여기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은 기존에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 가입을 할 때는 요건을 충족했는데 나중에 소득을 봤더

니 안 맞는 사람들이 탈락을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품을 해지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남아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경과조치로 적용을 하게 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오늘 전문위원…… 자세히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 가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허용, 정부에서는 찬성을 했고요. 또 사실 확정이 되기 전에 됐을 때에 전년도를 해야 되는데 전전년도를 해서 한 경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안 되는 경우 그 경과조치, 이 세 가지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셋 다 하지요, 셋 다 오케이.

○양경숙 위원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희가 조금 전까지 청년 지원, 경제정책 지원 제도들을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아마 기재부에도 청년 관련한 청년정책과를 새로 만들어서 그 역할이, 전체적인 청년 지원 경제정책들을 조정하는 업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그런 유사한 지원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 성과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차관님, 조금 전 설명 중에 경과조치 부분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조해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잠정 의결할 때 포함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예,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소위에서 의결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5쪽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에 대해서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을 한도로 일정률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밖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우선 고용진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양금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월세액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동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율을 소득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쪽에 각각의 안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급여액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동 과세특례가 최초로 신설된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월세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전체 근로자의 87%로 중산·서민층 주거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이고 다른 세제 지원 제도들도 대부분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1쪽,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소득·서민가구의 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세는 전체 응답자 중 16.6%의 비중을 보이는 주거 유형으로서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임차 가구의 비중 및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소득 중·하위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임차 형태입니다.

종합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 가고 있고 최근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및 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둘째, 23년 7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월세 가격은 74만 3000원, 연간 약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액 한도 75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62쪽 셋째, 세액공제율 한도를 크게 상향하는 동시에 소득 및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기준 및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자녀 출산의 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작년 말에 세액공제율이 10%와 12%에서 15%와 17%로 조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현행 세액공제율 수준은 다른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공제율 조정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월세액이 평균 240만 3000원 수준으로 연간 750만 원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2.5% 수준으로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3쪽,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은,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을 감안할 때 월세 거주민에 대한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은 23년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상위 2.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수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9억 원은 시세의 약 13억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23년 2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점과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4쪽,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월세액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거 관련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월세액에 포함함으로써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23년 7월 기준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민주택 규모로 환산하면 약 23만 3000원 수준이고 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 81만 6000원의 약 28.6%로 관리비가 월세 세입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자가, 전세, 월세 등의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경비로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다른 임차 주택인 전세 주택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좀 덜어 주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요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상을 넓히거나 요건을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는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것 중에 공제율 부분의 경우

는,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 주택금액 기준을 좀 올리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올해 2월에 시행령을 고쳐서 3억에서 4억으로 올렸고 공시가격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조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해진 기준 중에서 좀 시간이 지났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제 한도나 소득 요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세수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균형 있게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하자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다른 전세나 이런 쪽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혹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층이 세대별로 나와 있습니까, 몇 세 이렇게?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30대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면…… 지금 우리가 여러 체도를 가지고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내일준비적금이라든지 도약계좌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돈을 저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라면 혹시 청년의 비용을 좀 줄이는 쪽의 접근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든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사실은 의식주 중에 주거비용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750만 원 한도 채운 사람이 2.5%밖에 안 되고 이렇다면 이게 실질적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도를 키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국세청에서 그 자료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요.

차관님 말씀은, 여기 공제율 상향도 있고 소득 기준 상향도 있고 또 한도 상향도 있고 대상 주택 가격 문제도 있는데 그중에 대상 주택 가격은 이미 3억에서 4억으로 금년에 상향 조정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공제율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 다만 소득기준과 한도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또 시점상 검토 가능하디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것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고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제율은 지금 현재 거의 최고 수준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주택 기준은 이미 조정을 했고, 그래서 공제 한도와 소득기준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나중에 제출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4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으로부터 2023년 말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인 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확산하기 위해서 20년 3월에 도입되었고, 21년 3월 개정 시에는 기준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조정식 의원님 안은 세액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율 조정 없이 공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은 보다 많은 임대인의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조세특례의 20년 대비 21년 적용 인원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감소하였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이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여 주는 임대사업자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 보다 많은 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인하 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8쪽입니다.

다만 21년 국회에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조세특례로 인해서 세후소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세액공제율의 한계치가 70% 수준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율을 70%로 설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제도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는 현행 요건과 기준으로 1년 연장하는 안을 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22년에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명하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입했던 이 제도를 아직 소상공인들한테는 경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 1년 정도 연장을 하고 혜택은 더 볼 수 있도록 하되 한번 상황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부분은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70%로 정할 때 역진적인 상황이 안 나오게 하는 최고치를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걱정했던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고 연장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부안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로 하되,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90%가 되도록 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적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21년의 경우에 기한 후 신청은 계속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약 1.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을 현행 장려금 산정액의 90%에서 95%로 5%p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첫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신청기간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장려금은 국세환급금을 준용하여 환급하고 있는데 다른 국세는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시 감액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국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장려금은 기한 후 신고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감액률을 완화하면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기한 내 신청 유인이 감소할 것이므로 장려금 관련 행정의 지연 및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기한 후 신청 건수 및 지급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 관련된 사항 위주로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한 내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90%를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민원이 되게 많은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그래서 기한 내에 신청을 유도하게 하는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5%p 정도 올리고, 실제 100%에 비해서 5% 정도 빠지는 정도로 제도를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건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하고자 하는 한병도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자격요건은 총급여액 4000만 원 이하로서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지급액이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자격요건은 2014년 제도 도입 시점의 기준으로 현재까지 조정 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최소지급액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소득요건을 100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자녀 1인당 최소지급액은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하되 최대지급액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지급액이 지급되는 소득요건은 현행 2100만 원을 유지하되 최소지급액이 지급되는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정부는 급여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

해서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인당 최대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79쪽 둘째,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18년 64만 3000원에서 2021년 72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가구소득별로 평균 가구소득 100% 미만 가구들에서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장려금 소득자격요건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14년 이후 계속 불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동반되는 세수 감소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 연간 53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한병도 의원님 같은 경우 연간 7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22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한편 총급여액 기준의 상향 조정 정도, 최대지급액 인상 정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설명을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안 내면서 저출산 문제,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이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자녀장려금 부분은 요건 완화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결국 대상을 대폭 넓힐 것이냐 금액을 대폭 넓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기로는 수혜 가구 수가 21년 같은 경우에 58만 가구였는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는 한 100만 가구가 넘는, 103만 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대폭 넓히고 금액은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병도 의원님 안과 같이 하면 전

문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7000억 원 정도가 더 세수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노력해서 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정부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세제에서 꼭 나가야 돼요? 이게 사실상 재정지출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조세지출이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표를 위원님들 앞에 준비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이따 해 주시고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취지하고 비슷한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상 재정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 가운데서 세수감이 제일 큰 법안이잖아요. 저는 이 정도가 되면 재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책이 같이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출생 문제가 진짜 국가경제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저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행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수를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증세안이 같이 제출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태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로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현행법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상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원 혜택이 자녀세액공제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7세 이하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세 이상의 자녀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령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령만 금지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목적, 요건,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중복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가구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공제 허용은 소득세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가구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 세제개편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제도는 자녀 수를 주요 기준으로 하는 세제지원 제도로서 성격이 유사하므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도입 당시부터 규정된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 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면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수혜 대상 가구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장려금의 요건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자녀장려금 얘기하실 때 가급적이면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런 부분이 결국 조세지출이든 재정지출이든 서로 면밀히, 섬세히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는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7세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8세 이상 자녀로 하고 있는 것도 나름 그런 원칙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18세 이하를 다 적용하다 보니까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중복 수령을 허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을 중복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전통시장·문화비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자 하는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고 23년 교통분에 대해서는 80%입니다. 그리고 문화비와 현금영수증·직불카드의 경우에는 30%, 그 외 신용카드 부분은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조해진 의원님과 정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전통시

장 지출액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50%로, 문화비 지출액은 현행 30%에서 40%로 각각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기반 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문화비 소득공제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년 민간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2년 4/4분기 이후 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23년은 소비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세제 지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료품 주 구입 장소 중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자의 가계소비지출 중 문화비 지출의 비중은 가계소비지출액 대비 약 2.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89쪽 둘째, 실제 소비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부족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중 의결·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문화비에 대한 지출을 증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셋째, 소비여력이 더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제혜택에 직면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전문위원이 드린 것 같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제로 지원하는 부분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분석을 해 보면 사실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문화비에 대해서 공제율을 높이 적용한다는 부분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라도 ‘그쪽에서 좀 더 쓰면 혜택을 받겠구나’ 하는 부분들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한도를 올려주는 부분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게 연초에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어나운스(announce)에 따른 영향은 이미 4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조치기 때문에 남은 한 달간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한 달보다 1년을 더 늘리는 게 어때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그것 고지했다라고는 하지만 남은 기간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다른 것들은 다 최소한 내년 언제까지다, 3년 연장한다, 심지어 10년 연장한다 그리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보세요. 다 죽어 가요. 이것 세제혜택 기간을 늘리는 게, 수혜 기간을 늘려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법의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40%도 다른 데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연초에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0%p를 올린 거였는데요.

한시적으로 하는 조치에 항상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게 만성화가 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사실 전통시장은 4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내년까지 이 부분을 가는…… 만약에 내년에 또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안 좋아지는 상황이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을 생각해서 올리는 것은, 이게 한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훨씬 더 나빠졌어요. 올해 상반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고 내년에 더 나빠질 거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선제적 조치를 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양경숙 위원 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하자 이것은 너무 늦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뒤집는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이 조치가, 연말에 50%가 종료된다는 부분이 오히려 올해 안에 소비를 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관련해서.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전통시장 및 문화공연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는 120% 동의를 하는데 너무나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이런……

사실 문화영역이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다 배제하고 근로소득자들 중에서도 면세자들 배제하고 시작하는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진작할 수 있다는 방식의 논지는 사실 형해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앵콜요청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할 거면 명확하게 안 하고 할 거면 아주 확실하게 전통시장과 문화예술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내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좋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태호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제도는 21년 2월에 조특법 개정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형식으로 21년 연말정산에서 최초 적용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동 소득공제의 기한을 22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105% 초과

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해서 공제율을 20%로 10%p 상향 조정하였다가 23년 4월에 동 조항들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근로자가 2024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3년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에 5%의 공제율을 적용한 특별세액공제를 50만 원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고, 진선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10%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한도는 70만 원으로 하고 공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참고로 2021년과 2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었는데 개정안들은 최저사용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전년 대비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24년 중 적극적인 소비지출을 촉진함으로써 내수 회복과 경제활력 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들은 2021년과 22년에 시행되었던 한시적 소득공제와 달리 최저사용금액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21년과 22년의 한시적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감소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이므로 한시적 소득공제보다 더 큰 소비진작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에서 누진적 소득세 체계하에서 저소득층에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22년 이후 소상공인 체감 BSI 및 전통시장 BSI는 계속 100 미만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은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로서 공제 수준이 크고 그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대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24년에 더 큰 소비진작 효과를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취지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분의 이월공제를 규정하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하는 안을 제안 주셨는데요.

솔직히 세수감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것 자칫…… 105%라고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있어도 늘어나는 게 5% 이상이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 줬을 때 세수감이라는 게 도저히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효과 부분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늘 앞에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다만’이 나오면서 흠칫하는데……

저는 걱정이 어쨌든 경기가 되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내년에 내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증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절실함에서 이 법안을 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선순환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은 가

늠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지만 내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뭔가가 한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거에 있었던 소득공제하고 지금의 세액공제와의 제일 큰 차이가, 세액공제의 장점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한도를 채우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카드라는 게 사실 자기 명의로만 써야 되는 게 법의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배우자의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본적인 한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의 전년도 카드 소비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배우자의 카드만 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년 대비 5%는 쓴 금액 전체가 그냥 5%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제 한도 50만 원을 채운다는 게 너무 쉬운 게 현실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세수감이 나올 텐데 현실적인 그런 가족 카드를 이용한 절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세수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OTT 시청 금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문화비 내역에 OTT 사용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승 의원님 안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OTT 사용분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율 적용하는 것이고, 한병도 의원님 안은 OTT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OTT 콘텐츠 이용도 도서·공연비,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문화활동 경비로서 해당 문화활동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다만 영화 관람료에 대한 세제 지원의 성격이 OTT 관련 지원 필요성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화 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상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관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지만 OTT 등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급격한 이용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는 업계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둘째, 다른 콘텐츠 관련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해외 기반 OTT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내 OTT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기반 OTT 업계도 혜택을 보아 관련 업계 경쟁력의 강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현승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OTT 서비스 이용분에 한해서 적용하고자 하지만 외국 OTT 사업자들도 한국 자회사를 설립해서 실제 서비스 제공은 한국 자회사와 구독자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OTT 서비스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유는 OTT 시청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넣자는 취지가 단순히 비용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취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내의 OTT나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혜택이 간접적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현재 현실로 보면 대부분 해외 기업 OTT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혜택을 해외 기업들이 향유하게 되는 모양이 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영상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과격

적으로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조세특례에 관련한 홍영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전화망을 이용해서 5000원 미만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25년 말로 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몰기한이 폐지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의 활성화 및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 비용 보전이라는 동 조세특례의 목적을 항구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인정되는 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동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가 22년 세법 개정 시 현금영수증 정착 상황, 발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재차 일몰기한이 설정되었고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약 20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점 또한 조세특례를 통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동 조세특례의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이 감소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실제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

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서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해서 과세특례를 영구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공제 관련 과세특례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동 과세특례에 따라 22년도 총 46개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 383억 원의 조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105쪽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이라는 특례의 목적을 항구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수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제 대신 항구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조세 감면은 납부할 세액 또는 납부한 세액의 감면·환급을 의미하지만 현금영수증 처리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돼서 일반적인 조세지출 환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세지출과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금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과세특례의 항구화가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과세특례 대신에 재정지출 사업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첫 번째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와 관

련해서는, 이게 원래는 기한이 없다가 22년 세법 개정하면서 일몰이 도입된 건데 또다시 폐지하는, 정책 일관성 문제를 한번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의외이긴 했는데, 요즘 같은 때 전화망을 통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지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일몰 뒀다가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부분은, 이거는 심층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비용의 실비 지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항구화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홍영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홍영표 위원 이게 지금 세원 투명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측에서 이걸 실행하는 데 그런 문제점……

요새도 전화망으로도 하긴 하던데요. 아주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통신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한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화망은 활용도가 아주 낮아졌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걸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한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는, 이것도 예산 통일의 원칙 이런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는 다르게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 제안을 주셨고 이 앞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 줄여져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비 보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이거는 일몰이 필요 없다, 적용기간을 폐지하자고 하시면 정부로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법으로 옮기는 것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인터넷망하고 전화망하고 구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분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CU나 이런 편의점에 가면 그냥 ‘현금영수증 주세요’ 하면 당연히 거기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가지고 바로바로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화망의 경우에는 뻐 소리가 나 가지고 전화망 연결하는 소리까지 꽤 길게 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발급하는 데도 몇 초 이상 걸리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인터넷망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인터넷망은 실제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인터넷망도 쓰게 되면 비용이 거기에, 개인이 사용할 때도 얼마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인터넷망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가입돼 있는 그 단말기, 통신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단말기는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고 통신도 가입해야 되는, 사업을 위한…… 우리가 임대료를 내듯이 기본적인, 사업자가 들여야 되는 당연한 비용인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은 정부가 특별히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좀 강제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을 특별히 보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부분까지는 이제 인터넷망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인터넷이 저희들 때문에 특별히 쓰는 건 아니고 이미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곁들여서 같이 쓰는 경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됐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모르겠습니다, 인터넷하고 그거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 내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다시 환매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농어촌공사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 시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조건을 규정함에 따라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축산에 사용한 경우 환급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인이 임차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도 양도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윤준병 의원안과 정부안은 공통적으로 상속인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상속인이 농업인이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경영회생 지원 사업의 목적이 직접 경작 장려가 아닌 농가의 회생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농업인으로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과 같이 상속인도 농업인이고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이 임차기간 동안 사망하여 양도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인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할 경우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류성걸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고,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처럼 범위를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따른 양도세 환급과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모두 적용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따라 임차기간 내에 농지 등을 환매하고 양도세를 환급받거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농지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따라 농지 등을 환매하고 양도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그림으로 보시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에 해당 농지를 취득한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 양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오른쪽에 수증자가 양도할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개정안은 영농자녀 등이 농지 등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이후에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임대기간 내에 환매

하고 양도세를 환급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두 가지를 뒤에 붙여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맨 왼쪽에 증여자가 취득해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이후에 농어촌공사에 양도했을 때 이때도 증여자의 최초 취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매했을 때 양도세를 환급받고 그다음에 수증자가 최종 양도할 때는 맨 왼쪽에 있는 증여자 최초 취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동일인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현행법은 양도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연간 1억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감면과 그해 양도한 다른 감면을 합해서 계산하고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 감면 유형은 농지대토 감면, 수용 감면, 대토보상 감면, 자경 감면, 축사용지 감면 등이 있으며 농지대토만의 감면 한도는 5년간 1억 원이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합해서 5년간 2억 원입니다.

115쪽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 규정을 악용한 사례, 즉 사실상 단일의 토지거래임에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양도해서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지분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종합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토지의 일부의 의미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토지는 지분거래가 아닌 이상 필지 단위로 거래되어 거래되는 모든 토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토지이므로 엄밀하게는 양도 시점에 토지의 일부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둘째, 토지의 일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서 여러 필지를 보유한 양도인이 보유한 토지를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불법적 탈세의 범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필지를 보유한 자가 이를 분할매도하여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세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양도 시점에 임박해서 필지분할 등 임의적 변경행위를 통해 토지를 분할매도한 자만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필지를 보유한 자가 보유 토지를 분할매도하는 경우도 사실상 단일의 토지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규제할 것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셋째, 매수대금 부족 등 양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분할양도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상황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런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양도 전후의 사정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의 분할양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납세자가 본인이 개정안에 따른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소한이나마 예측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신고된 양도행위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실상 단일의 토지거래임에도 종합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안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으로 ‘사실상 단일의 토지거래임에도 종합한도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후’로 수정을 하고, 가령 2안의 여러 필지를 파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의 토지거래임에도 종합한도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의 일부 또는 지분을 양도한 후’라는 두 가지의 수정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117쪽 넷째, 개정안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행하여진 양도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양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따르면 3년 가까이 경과하여 행하여진 양도도 사실상 하나의 양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아닌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24년 1월 1일 양도한 이후 나머지 토지를 26년 12월 31일에 양도하더라도 1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한도 1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만약에 수정한다고 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 경과하여야 서로 다른 양도로 간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의견 주시되 뒤의 대안하고 또 2년과 3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설명된 것 같고요, 검토의견 중에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모호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1안에 해당되었습니다. 필지 분할 등 임의적 변경행위를 통해 토지를 분할매도한 자만을 규제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정리 하고요.

세 번째 제안하신 것에 ‘사실상 단일의 토지거래임에도 종합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넣어서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신데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 걱정은 ‘종합한도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는 것이 또 한번 사실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집행 단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네 번째 얘기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하는 지적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안으로는 그냥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회피할 목적으로'라는 것을, 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입증 책임을 행정 당국이 지도록 했는데 사실 회피할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이 제안하셨던 그 관련된 사항을 조문을 정리해서 다음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현행은 6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300억 원 초과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구간을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개정안은 1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600억 원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동 과세특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는 18년에 204건에서 22년 410건으로 100% 증가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의 경우에는 18년에 3119억 원에서 22년 7458억 원으로 139% 증가해서 최근 5년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최초 시행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2년에는 현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가 10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상향되었고 기본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는 10%, 60억 초과는 20%의 증여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업승계재산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상증세법과 함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가업 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124쪽 둘째, 기업의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부담능력과 고용창출 능력이 커져서 일자리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부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25쪽, 다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이 60억 원에서 300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저율과세 구간의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6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의 가업승계 증여 건수는 2017년 8건, 18년 8건에서 22년 26건으로 나타나서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27쪽 셋째, 현재 적용 중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은 22년 세법 개정안 심사 시에 논의돼서 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제도의 실적 및 세제 지원의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취지는 설명이 됐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고려 사항 마지막 부분부터 거꾸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도를 개편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좀 훼손된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업승계·가업상속·증여 이런 데 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부분은 조금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완화를 해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정부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또 논의를 거쳐 가지고 600억 원으로 정해졌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한도 내에서도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율을 한 300억 원까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법 개정된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증여재산가액이 60억~300억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 수가 별로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통계 자체가 공제 한도 부분이 600억으로 올라가기 전의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억 원으로 올라간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 대상은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용 대상은 넓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이다, 이것은 그동안 가업상속, 가업승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나왔던 얘기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정책의 방향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업승계 관련해서 증여특례나 상속공제 제도가 계속 확대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개정이 됐었고요. 지난해에 400건 이상이 특례를 받았어요. 아시지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세율이 10~20%인데 일반증여는 10~50%예요. 이게 훨씬 적어요.

세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60억 원 이상도 제가 볼 때는…… 이하인가요? 여하튼 소수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극히 소수 인원한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논의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추경호 부총리가 상속세하고 증여세, 물론 가업승계를 포함한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겠다 했는데 정부가 안을 안 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분 부분 아주 미시적으로 고치다 보면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이 전체적인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면서 균형 있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작년에 쪼끔 바꾸고 올해 또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상속세·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전면적인 검토를 하자. 정부가 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내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가업승계 분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조세의 원칙 중의 하나가 부의 형평성, 부의 분배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의 어떤 재정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재정의 기본적인 운용원칙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이 심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앞으로 재정 수요가 우리 사회 구조를 봤을 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며칠째 이렇게 해도 어디에서 더 건넌다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 인심 쓰듯이 깎아 주는 이런 식의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논의 수준을 가지고 작년에 논의했던 것을 올해 또 와서 이렇게 절끔 건드리는 방식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인심 쓸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혜영 위원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 온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말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가 남긴 말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권을 되찾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살아 있던 이런 정신이 그때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고 잘살게 된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는지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참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증여세 저율구간 확대, 작년에도 비슷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상속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을 함께 만들어 온 이 사회에, 게다가 대한민국의 부를 쌓아 온 과정은 사실은 사회가 그 부를 만드는 데 정부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이 증여세를 명예롭게 내지는 못할망정 어떻게든 이 구간을 줄여 가면서 상속·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이 저는 사실 별로 공감이 가지가 않고.

그리고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서도 업력이 오래된 업체가 성과가 좋다는 주장도 있고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그 반례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기업에서 선대의 후손이 CEO가 되는 경우에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미국의 사례, 빌라롱가랑 아미트의 2006년도 연구가 있고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700개 중견 제조업기업 대상으로 장남에게 가업을 승계했을 경우에 부실 경영 및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2007년도

에 블룸 앤 리넨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순위도 계속 요동치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상위목록에 있었던 기업들이 다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산업이 대전환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재편이 일어날 텐데 그만큼 산업의 업력이 곧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게 되는 힘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뚜렷한 경영 성과의 우위도 증명할 수가 없는데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대물림을 지원해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논점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미 증여세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제도도 돼 있고 우량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에서 금융상품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승계 관련된 필요도 조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가 계속 인용되는데 사실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저는 하여튼 견해는 좀 다릅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하고.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욕망이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한 정부가 없고 욕망을 거슬러 갈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고,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는 사회에 대한 공헌, 환원도 있지만 이윤 추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는 정책수단과 또 기본적인 이러한 바닥에 있는 것들, 욕망이든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고 또 잘 돌아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평균 업력이 우리나라 기업은 11.4년이고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7개인 반면에 일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웨덴, 독일…… 그렇다.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승계 불발 시 폐업 등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체 수는 약 3만 개다 등등 엄청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또 거론했어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오래 하신 분들의 민원도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정부가 좀 해야 되는 것이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가업승계 이런 걸 다룰 때 정부가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사전에, 정부가 정말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면 같이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60억에서 300억으로 이렇게 덜렁 들고 오면 무슨 근거로, 개략적인 추정만 하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하자는 거니까 저는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긴 호흡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다뤄야지 지금은 절대 결정될 수 없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책의 일관성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세금 깎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일관성을 갖는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상향해서 더 많이 깎아 주겠다, 작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중간 정도로 더 올려서 깎아 주겠다, 그것도 맞지 않고요.

또 왜 기업을 가족에게만 승계시켜 줘야 됩니까? 전문경영인들한테 맡겼을 때 훨씬 더 잘된다는 그런 보고서들도 많아요. 가족한테 줬을 때 몇 년 있다가 팔아먹는 경우도 훨씬 많습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할 말은 많습시다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범위도 넓혀 주고 사후관리 부분도 그렇고 분류도 고려하고 나름대로, 어쨌든 정부가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는 좀 부족해도 작년에 결정했잖아요. 그걸 1년 만에 또 들고 와서 구간을 변경해 달라? 저는 기재부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국민 전체적으로 화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작년에 결정한 걸 대대적으로……

제가 20대 국회부터 가업상속TF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확장해 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법을 바꿔서 시행을 1년 해 봤으면 좀 더,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변화의 추이들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완화해 준 걸 올해 또 들고 온다? 그러면 작년에 대한민국국회가 결정한 거는 그건 뭐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저희들은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차관님,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국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제가 볼 때는요. 결혼공제하고 이 부분인데, 결혼공제금액 그것보다 이게 사실은 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1년 만에 또 이슈화시킨다? 대한민국국회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한 1년이나 2년이라도, 3년이라도 해 보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금 자꾸 다른 나라와 업력을 비교하는데요. 산업의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일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유명한 독일에, 맥주가 가장 유명한 독일, 대기업이 맥주를 만드는 나라입니까? 대기업 상표 하나도 없어요. 다 미텔슈탄트, 다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가계 승계 위주로, 가업을 위주로 발전한 나라들이에요. 그걸 통계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맞는 가업승계를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그런데 1년 만에 이걸 또 근본적으로 트는 건, 저는 국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상속증여세제의 유산취득세 전환

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 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유지돼 왔던 상속증여세의 큰 틀을 바꾸는 부분을 1년도 채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사례도 좀 더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또 상속세법이 단순히 그 구간만 그냥 달랑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조문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좀 더,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고 의미 있게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년의 시간을 더 가지는 걸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상속세의 기본적인 개편이 1년이 미뤄졌는데 그사이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나마 다른 부분들보다,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나와 있지만 가업승계의 부분은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세금을 깎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속을 받을 때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승계하는 일시적인 과정에서 잠깐 현금 부담을 좀 줄여 줘서 원활한 승계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기업이 잘돼서 최종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면 다시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부분이니깐……

그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60억 초과가 숫자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20%라는 증여세를 내고서 생전에 승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승계가 일어나려면 10% 구간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늘려 줘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승계가 원활히 일어나고 우리 고용이나 투자가 더 유지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10~20% 또는 10~50%의 차이의 감면받은 세액은 결국은 상속이 일어날 때 다 정산이 되니까 이걸 대단한 큰, 이 자체도 큰 혜택이기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좀 큰 틀의 개편을 하기 전에 최근의 고령화 등을 감안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취지를 잘 받아들이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운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석 위원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제도는 그동안에 항상 지적돼 왔던 것이 필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너무 요건이 까다롭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독일 이런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업력이 짧고 또 장수기업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공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로서는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국감 때마다 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작년에 제도개선을 하고 이번에 1년도 안 돼서 또 가져왔다고 지적을 하는데, 아마 작년에 제도개선할 때도 정부가 하고 싶은 요건 대폭 완화 이런 부분이 잘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지금 기업 경영자들 또 오너들의 평균연령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고 싶은 또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로 실적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19대 때부터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과감한 요건의 완화라든지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재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한마디, 1분만 더 할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산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 가업상속제도 세제가 문제인지 그건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태리는 아시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명품을 대를 이어서 만들고, 그런데 제가 2, 3년 전에 이태리 갔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세, 4세들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중국 기업들이 다 샀답니다.

제 말씀은 가업상속제도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떤 특정인들, 특정 기업에 특혜 주는 식으로 끝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변동 또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걸 너무 부분적으로,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건드리지 말고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논의를 하면 우리 야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절끔 하고 올해 절끔 하는 식으로,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경숙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지금 가업승계로 인한 과세특례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410 건입니다. 그런데 과세특례로 인한 증여세의 특례 액수는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2022년 것하고 2023년 10월 말 현재까지 구간별 특례 감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수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410건에 대해서 2022년도 총 특례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전체 410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7500억입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7500억이고 그중에 세액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세액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양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국세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는

데 증여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는 거고 또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결국은 상속 대상이 돼서 상속세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60억, 300억, 지금 6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통계를 가지고 와 주시고.

그다음에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가업승계를 해야 될 기업들의 의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가업승계라는 게, 아까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이 7개고 일본의 경우 3만 3000개나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도 좀 분석적으로 해서 또 양경숙 위원님 자료하고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조세범에 대한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 또는 영농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에 규정돼 있는 조세범에 대한 적용 배제조항을 가업승계 및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32쪽, 종부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전통사찰 소유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윤영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이 전통사찰 소유 주택이 아니고 전통사찰이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취득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23년 9월에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법안의 취지는 달성됐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윤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석 위원 이 사안은 전통사찰이 오랫동안 보존해 온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주택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인데, 지금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시행령이 9월 5일자로……

○윤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분부터 다 적용배제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올해분부터 적용됩니다.

○윤영석 위원 되는 거고,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하고 취지가 동일한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실무자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재산세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20이라는 건,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 중에서 주거용 토지를 임대했을 경우에 1000분의 20 이상을 연간 임대수입으로 받으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종부세 종합합산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예.

○윤영석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행령으로 앞으로 항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 다 이렇게 정부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취지는 충분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전에, 작년도 부대의견이 위원님들 앞에 전부 다 배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 주시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24년 말로 종료하는 대신에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차량 구입 부가세 면제 제도는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9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량을 공급한 자동차 생산·판매업자 모두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조세소위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심사하였습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대신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재부는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 해결방안을 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기재부는 이에 따라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동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4년 말로 종료시키고 25년부터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둘째,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한 부가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급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넷째,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운송사업자가 부가세를 추징당한 경우 추징세액 고지일부터 5년간은 다시 환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환급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동차 생산·판매업자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게 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재료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원가구조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택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택시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택시용 자동차와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가세 환급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35개 업체, 약 2.4%의 간이과세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택시용 자동차의 부가세 환급 특례의 적용 대상에 간이과세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와 같이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환급대행자의 의무를 규정한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특례와 달리 개정안은 환급대행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만으로는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대행자의 통보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직접 환급 신청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환급대행자의 의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 부대의견 제7번입니다. 7번에 관련해서,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관련되는 사항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의견을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용역했던 경과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자세한 것은 세제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작년 정기국회 때 부대의견으로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한번 고쳐 보겠다라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했고 이번에 제시하는 안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세한 것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세수감이 한 700억~800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동차제조업자들이 사실은 부담을 하고 있던 부분을 정부가 세수감을 감내하면서도 개선하겠다, 다른

쪽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추가적으로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연구용역은 금년 3월에 시작해서, KDI가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이나 이런 점은,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 제도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사실 일반 원칙에는 솔직히 안 맞는 제도고요.

그런데 조세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조세원칙을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최선의 대안이라도 찾아서 그걸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었고 결국 면세도 영세율도 아닌 환급 방식만이 그래도 우리 조세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덜 충돌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안을 제출한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면세 제도를 한다면 다른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교육지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세체계 전체를 흔드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부대의견으로도 나오지만 예컨대 여성용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걸 면세에서 영세율까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갈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그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결을 못 하고 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안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 관련되는 사항은 논의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KDI에서……

KDI에서 용역을 하셨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KDI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지 세제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 할 정도로 그런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고용진 위원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효과는 정부가 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였잖아요.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영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내겠다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KDI 용역 결과대로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방안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전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효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과금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환급이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일부는 영세율, 일부는 환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하나의 예외가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고, 그 어떤 영역에서 왜 그 2개 영역만이 환급이 가능하고 다른 영역은 환급이 불가능하나 했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어업·임업용 기자재와 택시와 다른 부분은 다르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같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항상 고민되는 영역인데 그렇다 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불확정적인 요구 또 걱정 때문에 이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는 또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심 끝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결론을 금년 안에 내린 것입니다.

○양경숙 위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포함시킬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시키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세수감이 어느 정도 예측……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은 금액은 조그맣습니다, 사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예요. 거기다 일반택시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택시인 간이과세자가 아닌 정상적으로 수십 대의 차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도 과세로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매입세액공제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순수하게 간이과세 부분만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개인택시고 일반택시도 아주 소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반택시 간이과세자는 배제하겠다는 특별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수지만 같이 포함시키려고 그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조세체계에 관련되는 사항을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해서 오늘 3권을 다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분량이 5권까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오늘 7권까지 다 드릴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 진행 속도라든지 또 우리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유동수 간사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12월 2일 예산 처리기한 3일 전까지, 법사위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 준 현	고 용 진	류 성 걸	배 준 영
양 경 숙	유 동 수	윤 영 석	정 태 호
조 해 진	주 호 영	장 해 영	진 선 미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세 제 실 장	정 정 훈
조세총괄정책관	박 금 철
소득법인세정책관	조 만 회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용 주
국제조세정책관	정 병 식
관 세 정 책 관	이 형 철
국 토 교 통 부	박 병 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